

발 간 등 록 번 호

54-3510000-000052-10

호기심한 사람들이
잘 보낼 수 있는 남구

2017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Contents

제1부 총 평	3
1.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인사말	5
2. 2017년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평가	6
3. 2018년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방향	8
제2부 옴부즈만 제도 소개	11
1. 옴부즈만 개념	13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13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및 효용성	15
제3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17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9
2.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소개	20
3.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일반	21
4. 고충민원 처리절차	22
제4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성과	25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27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31
3. 기타 민원처리 현황(이첩각하처리)	33

Contents

제5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41
1. 남구청 정보공개심의회 파행적 운영에 따른 알권리 침해	43
2.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부결결과 변경요구	49
3.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증빙의 상세화 규정 신설 제안	51
4. 도로개설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의 사후 구제책 요청	53
5.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취득세 부과 의 타당성 검토	55
6. 정신병원 개원반대 진정민원	58
7. 지적재조사사업(주안5지구) 조정금 관련 민원	62
8.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요구	68
9. 용현동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관련 민원	70
10.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82
제6부 부 록	93
1. 언론보도 등 홍보사항	95
2.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3

2017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제 **1** 부

총 평

1.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인사말 5
2. 2017년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평가 6
3. 2018년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방향 8

제1부 총평

1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인사말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이 2016년 8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이래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2016년도는 조례제정과 옴부즈만 개소 등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준비단계였다고 한다면 2017년도는 운영 내실화를 통해 옴부즈만의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열린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제도를 정착시키고자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소통창구로의 정착’을 목표로 활동했던 지난해의 활동이 목표보다 미진하여 아쉬움이 남지만 출범 3년차를 맞아 명실상부한 구민 권익보호제도로서 옴부즈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의 남구 옴부즈만 활동성과를 2016년도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2016년도에는 민원인이 직접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민원이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아 부서가 의뢰한 민원만 7건 처리하는데 그쳤었던 반면 2017년도에는 총 79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어 제도정착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9건의 민원 중 68건이 구청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활불편으로 인한 단순 민원으로 분류되어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였고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고충민원은 11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행정기관의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제3자적 시각에서 해결한다는 옴부즈만 제도 본래 취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는 ‘구민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시민 친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43만 구민께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17년도 구민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에게 공표합니다.

2018. 2.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일동

2 2017년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평가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구민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6년 8월에 출범하였다.

초대 구민감사 옴부즈만은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용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김태웅 세무사 등 3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구성원에 변화가 생겨 현재는 손보경 골목 작은 도서관장과 김태웅 세무사 그리고 강원구 전 인천 도시공사 비상임이사가 남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구 옴부즈만들은 비상근명예직으로 주1회 5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1회의 정례회의를 갖고 있다. 고충민원은 인터넷, 전화, 서신, 직접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은 구민의 열린 소통창구로서 옴부즈만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했고 이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민원접수가 현저히 늘어나 총 79건의 실적을 이루었다. 이는 전년도 5개월간 처리했던 부서의뢰민원 7건에 비해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해결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구민들에게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었고 행정기관에는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기반을 다졌다고 말할 수 있다.

직접조사 처리한 11건의 민원 중 9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2건은 민원인의 요구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처리 하였다 .

정당한 요구로 분류된 9건 중에서 1건은 직접 조사한 내용을 제도개선안으로 하여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으며 4건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민원인의 요구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100% 수용하여 제도운영과 역할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구 옴부즈만은 ‘저예산의 비상근 전원합의제 체제’로 운영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옴부즈만 제도의 정립을 고민하고 실험해 왔다

지난해 ‘지방 옴부즈만 협의회’가 결성된 후 타 지자체 옴부즈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비상근으로 인한 업무의 단절성을 보완해왔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중히 여겨 가급적 현장 조사를 지향해 왔다.

매월 개최한 정례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실행하였으며 수시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면담하여 행정이 놓쳤을지도 모를 구민권익의 구제방안을 면밀한 잣대로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적은 예산의 위원회” 활동방식으로는 고충민원의 상시적 상담과 빠짐없는 현장조사의 실현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상근이나 반상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5개월의 활동을 돌아보면 옴부즈만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시간도 있었지만 제도 운영 초기를 벗어나면 되풀이 하지 말아야할 시행착오의 시간도 적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제도가 아직 확고한 정착기에 이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할 데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남구 옴부즈만이 출범하면서부터 구민과의 진정한 소통창구를 꿈꾸며 지표로 설정했던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치우쳐 들으면 어두워 진다”는 兼聽則明 偏信則暗(겸청즉명 편신즉암)의 취지만큼은 업무에 임하는 순간마다 늘 새롭게 새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말로 그 중압감에서 조금은 가벼워지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야 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국민적 열망으로 떠오르는 이 시대에 옴부즈만이 존재해야 하는 흔들림 없는 이유가 될 것으로 믿으며 2018년도의 더 큰 발전을 기약해본다.

3 2018년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방향

2017년은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한해였다면 2018년에는 구민감사 옴부즈만 활동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실현하려고 한다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옴부즈만이 구민의 인식 속에서 실질적인 구민권익보호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통제의 한 축으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 하고자 한다

첫째, 2017년도 하반기부터 민원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조사 처리 사안이 적었던 이유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구민의 인식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2018년도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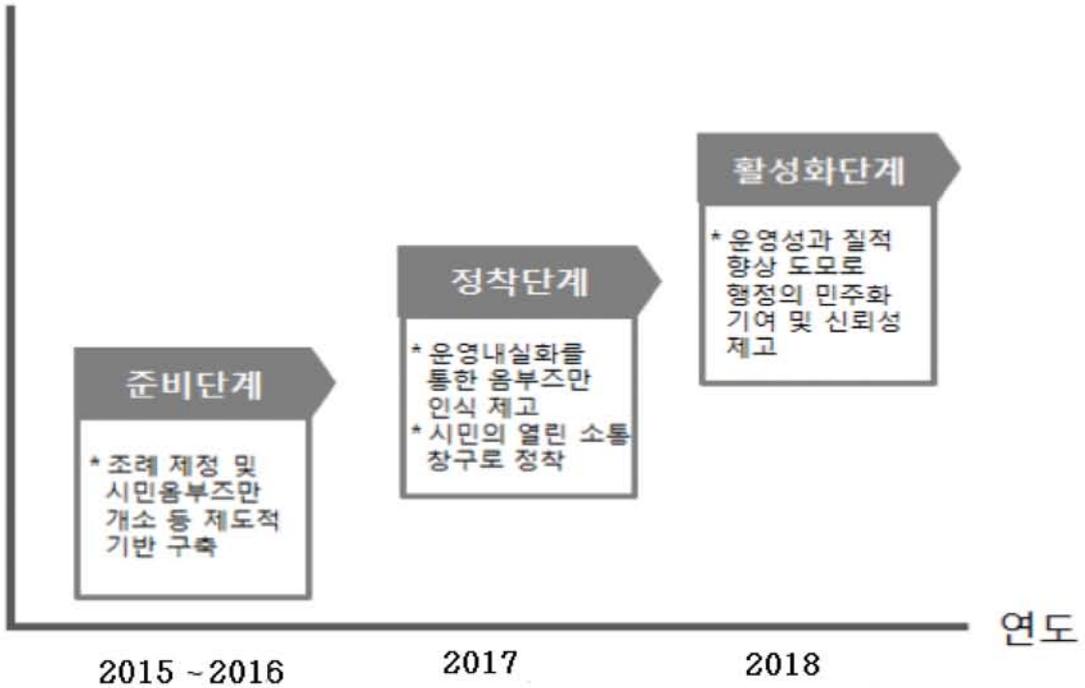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발판으로 자생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구청 내에서 일부 접촉이 많은 부서를 제외하고는 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부서별로 당면한 고충민원에 대해 옴부즈만과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인식하여 다양한 업무 협조를 통해 내부 인지도를 강화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이 한층 더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방향 로드맵

성숙도



※ 옴부즈만 활동 사진



옴부즈만 정례회모습



옴부즈만 민원상담 모습

제 **2** 부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 개념 13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13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및 효용성 15

제2부 옴부즈만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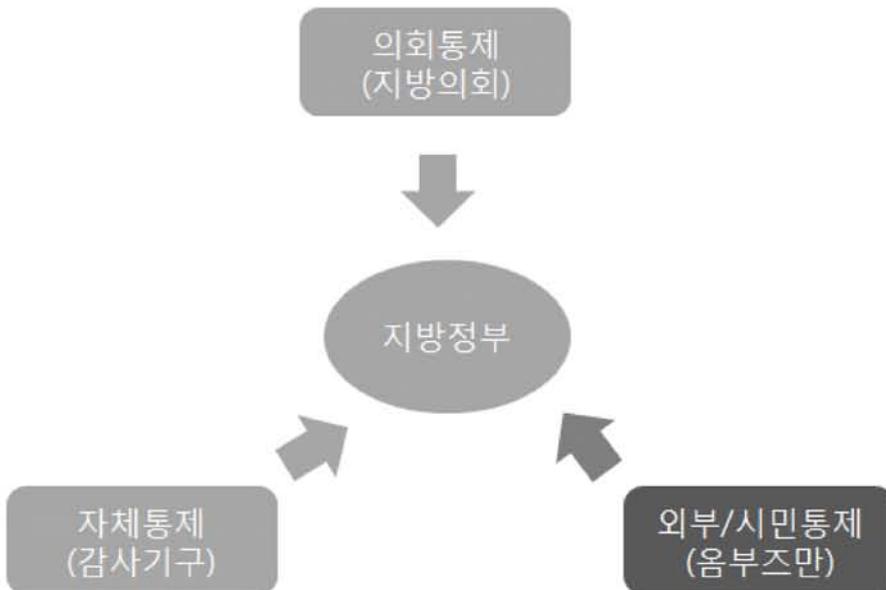
1 옴부즈만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임.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1)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복잡화·전문화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의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하고, 정당·압력단체(pressure group) 등은 상대적으로 권한과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통제 및 견제 기능 미흡하며, 특히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다양하여 의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통제가 필요함.



(2)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시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구 분	옴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 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 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시민의 권익구제
성 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 간	제한 없음	행정처분후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 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불편·부담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용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 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3)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지방옴부즈만이 지자체 관할 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윈윈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범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지자체가 신속히 시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4)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과거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국가 통치행위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가도 공공재 제공의 한 주체이며 국민은 '공공 서비스 소비자' 라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중심의 행정 가치는 국민인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 이를 위한 고객 현장제도가 널리 확산·보급됨.

3 ombudsman 기능과 특징 및 효용성

(1) ombudsman의 기능

① 행정통제 기능

ombudsman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②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ombudsman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음.

③ 행정개혁 기능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 스스로 개선이 어려우며, ombudsman은 이러한 관성을 깨트리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이 개선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어 행정개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특히, 의견표명·시정권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할 때에 처리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 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음.

④ 행정정보의 공개 기능

ombudsman은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 요청 시 신청인에게 열람·복사하여 줄 수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킴.

⑤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해가 상충될 경우 행정기관은 대체로 힘 있는 다수를 대표하는 결정을 하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 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ombudsman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2) 옴부즈만의 특징

- 옴부즈만은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짐.
- 옴부즈만은 법률·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선출
-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달라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있음.
- 민원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에 대개 무료
- 옴부즈만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
- 대부분 개인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계됨.

(3) 옴부즈만의 효용성

- 지방단위에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옴부즈만의 존재만으로도 옴부즈만이 없을 때보다도 더 신중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예상됨.
- 지방의회는 행정절차와 실무를 감독하고 개선하는데 더욱 용이하게 되어 이를 더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행정행위로부터 기인하는 대중의 불만과 어려움을 감소시키며, 시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상당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인식을 감소키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 사무에 대한 고충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지역차원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해 내고, 이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제 3 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9**
2.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소개 **20**
3.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일반 **21**
4. 고충민원 처리절차 **22**

제3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 도입배경

- 우리 구는 인천의 구도심으로 재개발 지역이 많고 이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체 제도만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구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 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추진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추진경과

- 2015.09.30.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2015.11.17.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6.06.15.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 2016.06.23.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의회 동의대상자(위촉예정자) 선정
- 2016.07.18.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3인 위촉
- 2016.08.01.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개소
- 2016.11.29.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1인 해촉
- 2017.03.06.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공포
- 2017.05.15.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1인 신규위촉
- 2017.06.29.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1인 해촉
- 2017.09.01.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1인 신규위촉

2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소개

(1)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구성개요

- 옴부즈만 수 : 3명
- 임기·신분 :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비상임 명예직
- 직 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2)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구성현황

옴부즈만		주요경력	위촉기간
손보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골목작은도서관장 ○ 전)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장 	2017. 05. 15 ~ 2019. 05. 14.
김태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하석용·김태웅 세무사 사무소 공동대표 ○ 전) 중앙세무법인 세무사 	2016. 07. 18.~ 2018. 07. 17.
강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 전)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실장 	2017. 09. 01.~ 2019. 08. 31.

(3)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체계



3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일반

(1)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의 자격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의 임기 및 구성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옴부즈만의 정수는 321명 이내로 하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이 위촉

(3)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의 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 구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4)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직무관할

-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5)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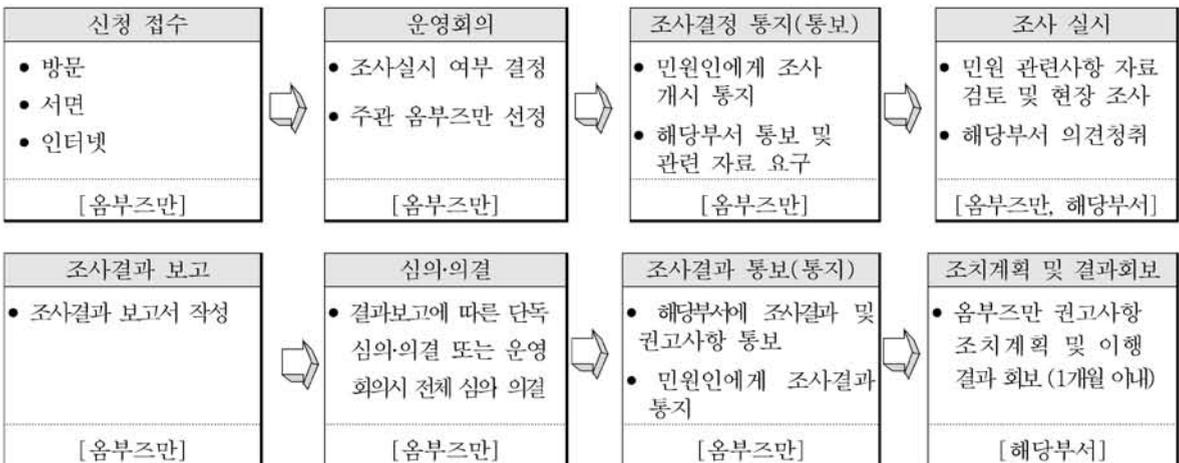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질문 및 현황청취 그 밖에 필요한 협조요청
- 조사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의뢰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구분	일반적 정의	구체적 정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2) 고충민원 처리절차



(3) 고충민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 모사전송 및 우편 :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리로 95 옴부즈만실(본관 5층)
- 인터넷 신청 : 고충민원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www.namgu.incheon.kr : 홈 > 주민참여 > 구민감사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고)

The screenshot shows the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page on the Nam-gu Citizen Complaint Board website.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Left Sidebar:** A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like '주민참여', '주민참여신청', '주민참여신청하기', '남구', '제안요청', and '구민감사옴부즈만'.
- Main Content Area:** Titled '구민감사옴부즈만_구성현황 및 운영개요' (Citizen Complaint Board -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Overview). It lists the board members:
 - 김태용 (Kim Tae-yong):** Chairman, former Deputy Mayor of Incheon.
 - 손보경 (Son Bo-kyeong):** Vice Chairman, former Director of the Incheon City Office.
 - 강한구 (Kang Han-gu):** Member, former Director of the Incheon City Office.
- Right Sidebar:** A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button and a table of board members.

번호	과목	공직	직업종	학력	희망사항	담당부서
01	주말 주민참여의 활성화	X	2019-04	000	없음	감사실
02	청정에 자정기를 도입해 버려...	X	2019-04	000	없음	감사실
03	공회관 주차장	X	2019-04	000	없음	감사실
04	진입문 안쪽 도로 포장 요청	X	2019-04	000	없음	감사실

[※ 구 홈페이지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 화면]

- 문의전화 : 032-880-4585, 5978 (팩스 032-880-4807)

(4) 고충민원 제외(이첩·각하) 대상

- 단순 일반민원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구 분	직접조사 여부	내 용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도 개 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조정
합 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또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성립된 경우
기 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 의 해 소	○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해소되거나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심의종결	○	신청인의 요구사항 관련 행정기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뚜렷한 해결방안 제시 또는 관계인과 조정·중재가 불가하여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 첩	×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는 경우
각 하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경우
상 담 안 내	×	민원상담 과정에서 단순민원 내용으로 해당부서로 안내 또는 관련 부서 담당자 연계처리 하는 경우
상 담 해 소	×	민원상담 과정에서 단순민원 내용으로 해당부서 담당자 의견청취 및 관계 법령 확인을 통해 민원내용을 즉시 해소하는 경우

제 4 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27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31
3. 기타 민원처리 현황(이첩·각하·철회) 33

제4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접수(계)	직접조사	이첩	각하	철회
79	11	65	2	1

(2) 접수 방식별 현황

총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기타
79	4	69	1	0	5

(3) 월별 접수현황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9	4	1	4	8	1	10	6	8	16	15	3	3

(4) 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총계	도시 계획	건설 건축	청소 환경	보건 위생	도로 교통	세무 회계	사회 복지	공원 녹지	경제 지원	일반
79	5	25	4	2	20	3	6	3	1	10

(5)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직접조사 (계)	완료	진행	조사완료 (계)	취하	기각 (심의종결)	심의 해소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시정 권고
11	11	0	11		2		1	4	4

(6) 옴부즈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관련부서 수용여부 현황

연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옴부즈만
1	신청인: 권○○	【의견표명】	세무1과	수용	김태웅
	건축물의원시취득과 관련하여 해당건축물의 취득세가 실질취득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특정사유로 인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신청인에게 과세되었기에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	실질과세를 준용하고있는 지방세기본법상 실질소유자가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아닌 제3자라는 판단이 소송의 판결을 통해 내려진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동지의 의견을 양 부서와 신청인에게 표명함.	신청인에게 소송을 권유하여 신청인이 소송으로 나아감.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중)		
2	신청인: 유○○	【의견표명】	건설과	수용	김태웅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인근의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 도로와 쟁점부동산 지면 고도차이로 통행의 불편과 부동산가격하락을 초래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부동산을 구청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	피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의 판단이 산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한 후속절차로 나아갈 것을 방법으로 제시함.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소송으로 소멸시효의 도과여부를 입증할 것을 권유 (소제기후 취위한 상태)		
3	신청인: 최○○	【시정권고】	총무과	수용	김태웅
	민원인이 남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정보공개심의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법적심의 대상이 아닌 '정보공개 목적과 양' 을 심의하여 내린 결론으로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며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위법한 심의를 하지 말 것을 촉구	정보공개심의회회의의 기각결정의 근거로 '정보공개 목적과 양' '정보공개 과다 청구 및 오남용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므로 차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있어 기각결정의 사유로 위 사항을 배제하여야 할 것을 권고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차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반영하기로 함.		

연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옴부즈만
4	신청인: 주안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구역 주민	【시정권고】	토지정보과	수용	김태웅
	주안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나 대상자로부터 납부 조정금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민원과 함께 조정금 재조정을 요청	해당사업에 대한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 과정이 관행적으로 서면결의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는 실제 회의 개최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례에 배치 되는 절차적 하자이므로 2차 감정평가 금액결정시 회의개최를 통해 이를 치유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	제2차 감정평가금액 결정시 실제 회의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결정된 금액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 사업을 진행 하기로 함		
5	신청인: 박00 외 1,492명	【의견표명】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수용	강원구
	민원인들의 주소지 인근에 개원하는 정신병원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 제기	병원설립허가는 지속적 행정위로서 설립요건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취소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병원개원으로 인해 야기될 교통불편이나 병원외관 차단 시설요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는 의견표명	차단시설에 대한 보안을 요청하여 불투명 필름시공 차폐가 이루어 졌고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 단속 계획임을 통보		
6	신청인: 이00	【의견표명】	건축과	수용	강원구
	장기 미준공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판결 확정시까지 순연하고 있었으나 건물의 현명의인과 대립하는 민원인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민원제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판결확정전에 실시하고 판결확정후 소유권자가 변동이 되면 후속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표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실시하고 판결의 결과를 지켜 보기로 결정함.		

연 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옴부즈만
7	신청인: 장00 외 5인	【시정권고】	건설과	수용	김태웅
	시 컨설팅 감사를 통해 구소 유지를 30년이상 무단점유 하여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5년분의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대하여 점유자들이 부과취소를 요구함.	변상금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으나 소급부과의 기산점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처분함으로써 일정금액감액하여 재 처분 할 것을 권고	변상금 소급 부과처분의 기산점을 정정하여 재처분으로 나아가기로 함.		
8	신청인: 고00	【시정권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수용	손보경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사전통지와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	과태료 처분은 불이익 처분이므로 처분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나 조사 결과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 절차를 나아가갈 것을 권고	옴부즈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 절차로 나아감.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연번	접수일자	접수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1	1. 9.	방문	구청장	남구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강구	각 부서별 비정규직 담당자 면담과 비정규직의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조정실로 업무이관	김용석	완료 (제도개선)
2	3. 8.	방문	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의 부당한 운영 실태 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차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반영하기로 함	김태웅	완료 (시정권고)
3	3. 8.	방문	권○○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취득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는 판단이 사법절차를 통해 소명 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부서를 통해 소송절차로 나아갈 것을 안내 하도록 함	김태웅	완료 (의견표명)
4	3.29.	방문	유○○	도로개설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의 사후구제책 요청	10여년전 발생한 피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법적 판단에서 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소송절차로 나아감	김태웅	완료 (의견표명)
5	4.19.	부서 의뢰	건축과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부결관련 의견보충	행정처분은 처분당시의 법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관련 판례(대판1992.12.8. 92누 138 13) 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므로 민원인의 주장대로 종전신청당시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을 통보	김태웅	완료 (기각)
6	4. 19.	방문	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 증빙의 상세화 규정 신설제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직접 건의 할 것을 안내	김태웅	완료 (기각)

연번	접수일자	접수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7	6.26.	구청 장의뢰	주안5지구 지역 주민	지적재조사 사업(주안5지구) 조정금 관련 민원	조정금 산정방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법률에 명시된 실제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절차적 하자로 지적하고 실제 회의를 통해 하자를 치유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를 권고함	김태웅	완료 (시정권고)
8	9. 15.	진정 민원	박○○외 1,492 명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 진정민원	의료기관 설립허가는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요건에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으나 병원설립으로 인한 교통불편 이기와 차단시설요구 등의 후속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 하기로 함	강원구	완료 (의견표명)
9	10.24 .	인터넷	이○○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촉구	소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부과를 지연했던 장기 미준공 무허가 건물의 현재 명의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송이 종결된후 실제 소유자에게 법적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의견표명	강원구	완료 (의견표명)
10	10.26 .	방문	장○○ 외 5인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변상금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취소할 수없으나 소급부과의 기산점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일정 금액 감액하여 재 처분 할 것을 권고 하였고 건설과에서 이에따라 재처분함	김태웅	완료 (시정권고)
11	12.7.	방문	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장애인 자동차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음을 들어 본래의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 절차로 나아갈 것을 권고함	손보경	완료 (시정권고)

3 기타 민원처리 현황(이첩 · 각하 · 철회)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1	2017.1.4.	허○○	건축과	용현동 00아파트단지 상가 무단증축신고	답변완료 (시정명령)
2	2017.1.11.	오○○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요청 (뇌병변 3급 판정자인 민원인의 활동지원요청 사항)	답변완료 (활동보조인배치)
3	2017.1.13.	김○○	경관녹지과	주안역불법광고물 신고 (주안역 근처 불법광고물이 범람하여 불편한 상황)	답변완료 (불법광고물제거)
4	2017.2.21.	허○○	건축과	인근 재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인 소유 건물의 피해발생 (도화동 소재 재건축 공사장 옆 건물주인 민원인의 피해발생 진정민원)	답변완료 (건축주와 협의조치)
5	2017.3.25.	박○○	환경보전과	정화조 청소업체의 청소 예약 무단 변경 (정화조 청소업체 청소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청소가 예약된 날짜에 실시되지 못한 상황임)	답변완료 (업체 행정지도)
6	2017.4.10.	송○○	경제지원과	남구 웨딩뷔페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고발 (계약취소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한 감독관청의 시정조치 요구)	답변완료 (합의 중재)
7	2017.4.12.	김○○	건강증진과	청소년 흡연단속 (남구청 청소년 회관 건물 뒤쪽과 그 인근 미성년자 흡연단속 요청)	답변완료 (계도 강화)
8	2017.4.17.	박○○	건축과	주거지 인근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차량사고 위험 증대 및 소음 발생 (주안동 00 빌라 거주하는 민원인의 인근공사장 출입차량으로 인한 주차위험과 소음피해 대책 요청)	답변완료 (건축주에게 주차 및 소음 발생억제 협조요청)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9	2017.4.21.	김○○	도시창생과	남구 재개발 1구역 사업진행의 투명성 조사요청	답변완료 (조합에서 사업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안내)
10	2017.4.23.	장○○	지혜로운 시민실	관교어린이 도서관 운영요원의 근무태도개선 요구 (도서관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연히 수면을 취하는 상태 지적한 상황임)	답변완료 (주의촉구 및 재발방지 약속)
11	2017.4.26.	박○○	송의2동	인주대로69 00차유리가게 골목 방치 파유리 수거요망	답변완료 (수거처리)
12	2017.4.28.	장○○	건설과	인천기계공고 앞 맨홀 덮개 조치요청	답변완료 (조치완료)
13	2017.5.14.	한○○	도시관리과 도화2·3동	도로무단 점용 및 폐기물 무단 투기 (염전로 00번가 일대 업체의 도로단 점용 및 폐기물 투기상황)	답변완료 (조치완료 후 통보)
14	2017.6.5.	황○○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제공기관(조이언어심리발달센터)이 유아동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여부 판단 (발달센터 이용 아동이 수업 후 혼자 놀다가 다친 사안에 대해 치료비의 보험처리 가능성여부 문의한 사안으로 보험처리절차를 안내함)	답변완료 (사실확인 및 안내)
15	2017.6.5.	강○○	건축과	건축허가 표지판 미부착 및 건축공사장 인근의 피해발생 (용현동 00번지 일대 공사장의 피해예방 요청 사안)	답변완료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시행계획안내)
16	2017.6.5.	김○○	도시관리과	도로 무단점유로 인한 교통불편 및 분쟁발생 (미추홀대로 소재 건강원의 도로무단점용 시정요구 사안)	답변완료 (현장확인 및 자진정비 기간 부여)
17	2017.6.8.	임○○	건설과	도로포장 및 방치차 처분, 가로등 설치 요청(학익동 00 아파트 뒤쪽길 포장 및 가로등 설치 요청)	답변완료 (도로재포장 및 보안등 설치계획안내)
18	2017.6.16.	강○○	건축과	6.5일자 민원처리에 대한 미비점 재제기 (용현동 일대 공사장 민원 재제기)	답변완료 (현장조치)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19	2017.6.16.	이○○	기초생활보장과	결식아동 푸르미 카드의 형평성 문제	종결(철회)
20	2017.6.16.	김○○	건축과	보행자 도로확보 요청 (경인로 인근도로에 보행자 도로 확보요청이었으나 도로확보의 법적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불가 통보)	답변완료 (설치불가 통보)
21	2017.6.22.	황○○	복지정책과	조이언어 발달심리센터 이용 중 부상자 재질의 (6.5차 발달센터이용자 부상 민원인의 센터 안전점검 재촉구)	답변완료 (센터 안전교육 강화 주의 촉구)
22	2017.6.26	허○○	공원녹지과	도로화분설치요청 (인천가정법원 뒤쪽 삼거리 코너부분에 주차차량이 많아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니 주차방지를 위해 코너에 도로 화분 설치를 요청함)	답변완료 (도로법상 설치불가 통보)
23	2017.7.3.	김○○	교통정책과	학익동 세계로 마트 교통난 (세계로 마트가 오픈 후 발생한 교통 혼잡상태 해결요청)	답변완료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
24	2017.7.7.	최○○	교통정책과	낙섬서로 20번길 햇님어린이 공원 옆 무료주차장 보수정비	답변완료 (보수예정 및 주차장 설치 불가 통보)
25	2017.7.11.	오○○	자원순환과	폐기물스티커 판매에 관한 고충 (폐기물 스티커판매를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는 이유와 기존의 판매처 이용 불편사항)	답변완료 (이해설득 및 인터넷 배출 시스템 안내)
26	2017.7.24.	문○○	환경보전과	소음공해 해결요청 (주안동 00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소음피해 호소)	답변완료 (민원인과의 통화불가로 소음측정 불가능 통보)
27	2017.7.25	박○○	보건행정과	정신병원 입주반대 (주안동 소재 00 병원이 정신병원으로 입주하는 것에 대한 반대)	답변완료 (허가신청 사실이 없음을 통보)
28	2017.7.27.	안○○	도시관리과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사전통지 (송의동 00번지 일대 무단 도로점용한 자재를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일 다음날 자진 정비하였음을 들어 부과취소 요청)	답변완료 (과태료 부과취소 불가 통보)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29	2017.8.4.	홍○○	건설과	주택 앞 도로포장 요청 (동주길 94번길 인근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요청한 사안)	답변완료 (막다른 사유지로 도로포장 불가통보)
30	2017.8.11.	박○○	보건행정과	정신병원 건립 반대 민원 재제기 (주안동 00병원 민원)	답변완료 (행정계도 및 협조요청)
31	2017.8.13.	문○○	환경보전과	소음공해 민원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7.24.일자 민원과 동일사안)	답변완료 (소음측정요건 안내 및 측정계획 전달)
32	2017.8.14.	이○○	도시창생과	비파해로 담벼락이 무너짐 (우기 토사유출로 인한 문학동 00번지 건축물 붕괴)	답변완료 (피해복구공사 추진 계획 전달)
33	2017.8.16	안○○	교통정책과	주차라인 신설요청 (송의동 00빌라 주민간의 주차분쟁 사안)	답변완료 (주차라인 신설 불가 지역 안내)
34	2017.8.17	오○○	도시관리과	무단점거 폐포장마차 철거요청 (남구 석정로 일대 00 빌라 앞 방치 폐포장마차 철거요청)	답변완료 (1차 경고장 부착 및 지진정비 미이행시 강제수거 예정 계획 통보)
35	2017.8.22	노○○	도시정비과	주택재개발 진행관련 민원 (학익동 주택재개발 진행부진 이유 및 진행상태 설명요구)	답변완료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위한 협의 진행중 사실 안내)
36	2017.8.22	허○○	교통정책과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도로 통행불가 (낙섬서로 10번길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답변완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절차 안내 및 행정계도 실시 계획 안내)
37	2017.9.1.	유○○	건설과	용현동 토지금고 도로 파임으로 인한 민원 (굴다리 지나 토지금고 시장방면 도로바닥 파임으로 인한 불편)	답변완료 (도로보수완료 통보)
38	2017.9.5.	이○○	교통정책과	건설공장 인근주민의 공사장 불법주차 및 소음 피해 (독정리로 118번길 인근 인근공사장)	답변완료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소음 최소화 협조요청)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39	2017.9.6.	이○○	도시창생과 인천도시공사	청운대 앞 도로변의 벤치로 인한 위험제거	답변완료 (옥외 파고라는 다 수 이용자 편의시 설 철거 불가 통 보)
40	2017.9.7.	박○○	건설과	용정초등학교 등하굣길 계단보수 요청	답변완료 (계단보수 완료 통보)
41	2017.9.8.	서○○	도시관리과	00아파트 야시장 개최의 건 (9월2~3일 00 아파트 야시장 개최시 도로무 단점유로 인한 불편)	답변완료 (행사주최자 측의 무단 도로점용으 로 경찰 조사 중임 을 안내)
42	2017.9.11.	노○○	도시관리과	옥외대형간판으로 인한 빛공해 (인천가정법원 옆 건물 옥외광고판 빛 공해 피해)	답변완료 (옥외광고물 관리 자에게 조명 시간 조정 협조요청)
43	2017.9.13.	박○○	인천도시공사	도화동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 안내 및 편의 시설 개선	답변완료 (사업주체는 (주)인천도화공공 임대개발전문위탁 관리부동산 투자회 사임을 안내)
44	2017.9.18.	박○○	건축과	옥상 철골구조물의 불법구조물 여부 및 주차 장 허가의 문제점 (주안동 00병원 민원)	답변완료 (철골구조물은 불 법 구조물이 아니며 주차장의 적법시설 확인)
45	2017.9.19.	박○○	교통정책과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주안8동 원병원 개원으로 인해 증가한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답변완료 (단속강화 지속적 실 시)
46	2017.9.21.	이○○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쉼터시설에 노숙자 및 반려견 배변처리 문제 (용현3동 00쉼터에서 발생한 사안)	답변완료 (노숙자 시설 입소 및 쉼터 정비계획 통보)
47	2017.9.21.	이○○	도시관리과	소방도로 사이에 실내포차 테이블 운영 문제 (소방도로사이에 간이테이블을 설치하고 운 영하고 있으므로 조치요청)	답변완료 (자진정비명령 조 치완료)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48	2017.9.22.	박○○	건축과 보건행정과	정신병원 허가취소 차단시설 보완요청 (주안동 00병원 관련 민원)	답변완료 (법상 하자 없음을 통보)
49	2017.9.25.	장○○	건설과	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악취발생 (용현시장 후문 수협 우측 옆 골목 하수도 파열로 인한 악취 발생)	답변완료 (준설공사 완료 통 보)
50	2017.9.28.	박○○	교통정책과	정신병원 주변 주차단속 (주안동 00병원 관련민원)	답변완료 (하루 1회 이상 단 속 및 계도 실시 안 내)
51	2017.9.28.	박○○	교통정책과	정신병원 주변 주차단속 (주안동 00병원 관련민원)	답변완료 (수시단속 실시계 획 안내)
52	2017.10.9.	이○○	용현5동	511번 공용버스 정류장 앞 쓰레기 처리 요청 (추석연휴기간동안 발생한 쓰레기 처리요 청)	답변완료 (청소 후 지속적 관리 계획 안내)
53	2017.10.9.	이○○	용현5동	인하대역 3번 출구 주변 청소요청	답변완료 (청소 후 지속적 관리 계획 안내)
54	2017.10.10	김○○	건설과	하수구 악취문제 처리 요망	각하 (장소 누락 및 연락 불가로 민원접수 불능)
55	2017.10.11	이○○	건설과	인천 00아파트 주변 보도블럭 보수요청 (장마로 움푹 개진 보도블록 보수요청)	답변완료 (보수예정 계획통 보)
56	2017.10.16	문○○	교통정책과	경인로 주차단속 요청 (송의삼거리에서 제물포역방향 불법주차 단속요청)	답변완료 (단속강화예정 통 보)
57	2017.10.16	문○○	건축과	공사중 건물의 반사유리 단속요청 (송의동 공사장 건물의 불편사항)	답변완료 (건축관계자에게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협조요청)
58	2017.10.17	윤○○	건강증진과	버스정류장 옆 흡연피해 (송의동 00중학교 버스정류장 흡연단속요청)	답변완료 (행정계도)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59	2017.10.19	홍○○	복지정책과	기초수급자 이사지원 서비스 요청	답변완료 (이사지원서비스 불가 설명 및 기타 생계지원 안내)
60	2017.10.24	김○○	도시관리과	불법광고물 단속	각하 (민원 발생지와 연락처의 불기재로 요건불비 각하)
61	2017.10.26	김○○	건축과	학교인근 공사현장 단속	답변완료 (공사관계자에게 협조요청 및 안전조치 철저 독려)
62	2017.10.27	김○○	세무1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중과세 근거 및 무허가 주택의 소유권 귀속여부 답변요청	답변완료 (과세근거 및 과세대상자 안내)
63	2017.10.30	허○○	교통정책과	일방통행 길 삼거리 불록거울 설치요청	답변완료 (불록거울 설치 예정통보)
64	2017.11.3.	김○○	건설과	주안동 밀알교회 앞 하수구 악취 차단 요청	답변완료 (악취차단장치 설치예정 통보)
65.	2017.11.3.	김○○	도시관리과	주안동 천년웨딩홀 주변 인도상의 불법광고물 제거요청	답변완료 (자진정비 안내후 단속예정 통보)
66.	2017.11.21	김○○	건설과	주안 공단지역 가로등 설치요청	답변완료 (설치예정임을 통보)
67.	2017.12.5.	이○○	건설과	회사 진입로 도로포장 요청	답변완료 (포장계획 통보)
68	2017.12.8	구○○	도시관리과	송의동 불법적치물로 인한 불법주차문제 해결요청	답변완료 (경고장 발부 및 강제 수거예정 통보)

제 5 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1. 남구청 정보공개심의회 파행적 운영에 따른 알권리 침해 43
2.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부결결과 변경요구 49
3.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증빙의 상세화 규정 신설 제안 51
4. 도로개설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의 사후 구제책 요청 53
5.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취득세 부과 타당성 검토 55
6. 정신병원 개원반대 진정민원 58
7. 지적재조사사업(주안5지구) 조정금 관련 민원 62
8.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요구 68
9. 용현동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관련 민원 70
10.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82

제5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1 남구청 정보공개심의회 파행적 운영에 따른 알권리 침해

1 민원 개요

주관 옴부즈만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각결정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함
김태웅	

□ 주요 내용

신청인이 남구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짐.

□ 민원인 주장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의가 내린 기각 결정은 법적 심의 대상이 아닌 '정보공개 목적과 양'을 심의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재발방지 촉구함.

2 사실관계 및 민원인의 요구사항

□ 사실관계

- 2016년 12월 21일 민원인은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화 교육을 신청한 주민과 공무원의 명단, 정보화 교육을 신청하고 강의를 실제로 수강한 주민과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기재한 출석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
- 2017년 01월 03일 민원인 최○○이 청구한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함.
- 2017년 02월 07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함.
- 2017년 02월 09일 민원인은 비공개 결정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함.
- 2017년 02월 13일 정보공개심의회가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2017년 03월 27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함.

□ 민원인의 요구사항

-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인천 남구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불법적인 심의안건을 다루지 않도록 할 것.
- ‘신의칙’에 따라서 정보공개외 피청구인되는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제척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요구
- ‘정보화 교육 출석부’ 관련 비공개 처분의 철회
-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청구 목적 등에 검열을 한 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사과 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법 강구

3 조사경위

□ 민원접수과정

- 2017. 2. 22. 옴부즈만 면담 신청
 - 고충민원의 제기 요건이 30인 이상의 연서를 요하게 되어 있어 요건불비로 접수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조례개정 후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
- 2017.3. 7. 민원정식 접수
 - 2017. 3. 6.자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 민원접수가 가능

□ 조사결과

- 2016. 12. 21.자 민원인의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려진 남구청의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였음.
- 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2017. 2. 7.자로 민원인의 “부분공개를 인용할 것”을 주문으로 하는 이의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7. 2. 13.자로 열린 인천광역시 남구청 정보공개 심의회(위원장 한길자)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그 사유로 ‘부분공개’의 방식이 정보공개에 따른 민원인의 청구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정보공개 신청 목적이 개인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 건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의 ‘정보공개의 양과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른 과거 전력’ 등을 근거로 하였음을 확인함.
- 또한 민원인은 위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과 함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 3. 27.자로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인용결정을 받음.

- 주문 : 피 청구인이 2017년 1월 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 ① 2015년과 2016년에 정보화 교육을 신청한 월별 주민 신청자 현황은 강좌명, 전체건수, 성별, 신청일자 란을 ②2015년과 2016년에 정보화 교육을 신청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 대상자 명단은 연번, 소속란을 ③ 2015년과 2016년에 정보화 교육을 신청하고 강의를 수강한 월별 주민 출석부 원본은 강좌명, 자리번호, 순번 란을 ④ 2015년과 2016년에 정보화 교육을 신청하고 강의를 수강한 공무원 출석부 원본은 과정명, 기간, 장소, 번호, 소속 란을 공개하라.

□ 검토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자치 법규」

조례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심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조례 제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판단 및 의견

□ 해당안건에 대한 판단

- 2017년 2월 13일 개최된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주요 근거는 ‘정보공개 목적과 양’, ‘정보공개 과다청구 및 오남용’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행정안전부 답변(2AA-1301-087307)과 인행심 201D-109호를 근거로 하여 정보공개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8조[기능]를 살펴보면 정보공개 심의회가 다루는 심의 안전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심의 안전의 선정과 선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민원인이 제기한 [정보화 교육]과 관련한 이의신청 안전 자체는 조례 8조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전이었다고 판단되며, 그 판단에 있어 ‘정보공개 목적과 양’, ‘정보공개 과다청구 및 오남용’을 들어 기각 결정한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조[목적]을 벗어난 판단 근거라 볼 수 있어 위의 기각 결정한 처분에 무리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민원인이 제시한 인행심201D-109호는 정보공개심의회 안전 자체를 ‘정보공개 과다청구 및 오남용에 관한 심의’로 하여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사례라 볼 수 있어 2017년 2월 13일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 안전 상정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나 기각의 판단 근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의 현황은 위원장 한길자 외 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인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직으로 총 7인의 위원 중 과반수인 4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의사결정시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인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9조를 적용한 다면 심의회 개의요건은 4인 이상이며 이중 3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최소의결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외부 위촉직위원 3인 이상이 불출석하게 될 경우 남은 4인중 3인이 내부인원으로 구성되어 심의회 결정에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런 경우를 상정한 중립성 훼손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의견(일부시정권고)

-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인천 남구청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불법적인 심의 안전을 다루지 않도록 할 것
- [정보화 교육]과 관련한 정보화심의회 안전 상정 자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조례 8조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전이었다고 판단하며 다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 목적과 양’, ‘정보공개 과다청구 및 오남용’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신의칙’에 따라서 정보공개의 피청구인이 되는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자연 제척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요구

- 심의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직접이해 관계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민원인이 언급한 취지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별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즉, 그 사실의 여하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이다(민법 제22조, 제27조, 제44조, 제63조, 제963조).

- ‘정보화 교육 출석부’ 관련 비공개 처분의 철회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2017년 3월 27일의 결정대로 인천 남구청은 민원인이 요청한 [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청구 목적 등에 검열을 한 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사과 요청
 - 정보공개심의회의 민원인 청구 안건 상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안건의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벗어난 잘못된 근거 적용의 오류를 정보공개심의회가 인지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보공개심의회의 중립성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법 강구
 -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외부 위촉직 위원의 수는 4인이어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9조(회의운영)와 관련한 의결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있어 중립성의 보장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임.

5 부서 조치 결과(수용)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키로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종결처리함

2 건축심위원회 건축심의 부결결과 변경요구

1 민원 개요

주관 옴부즈만	남구 도화동 000-0외 2필지에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김태웅	

2 사실관계

□ 발생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000-0외 2필지에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진행됨.

- 2016.05.30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2016.06.09 보완요청 (심의관련도서 제출할 것 - 2016.07.01한)
- 2016.07.04 1차 보완연기처리 (2016.12.30한)
- 2017.01.14 2차 보완연기처리 (2017.03.31한)
- 2017.03.27 3월 제2회 건축위원회 개최 및 '부결'

* 부결 - 안전이 건축법령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한 사항

□ 부결사유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위반됨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나,
- 신축 대지만 6m 도로를 확보하고 신축 대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4m 도로임

□ 민원인의 주장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및 지정고시가 2016.06.01 시행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부결' 사유를 치유하여 재 접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해 주기를 희망함

3 조사 과정

- 2017. 4. 19. 민원접수 및 관련부서(건축과 공동주택팀)와 상담
- 2017. 4.26. 관련법령 및 판례 검토 후 의견서 작성

4 판단의 근거 및 결론

□ 판단의 근거 (대판 1992. 12. 8. 92누13813)

행정행위는 그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시행된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결 론 (기각)

가. 접수일 기준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민원의 요청은 2016.05.30. 허가 신청 당시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보완요청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이는 소관 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당 안전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어 판단일 기준인 2017.03.27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함이 마땅함.

나. 또한, 2017. 03. 27. 부결 사유를 치유하여 재 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접수일을 당초 접수일인 2016. 05. 30. 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민원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초 접수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5 해당부서 조치결과(기각)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함

3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증빙의 상세화 규정 신설 제안

1 민원 요지

주관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증빙의 상세화 규정 신설을 제안함
김태웅	

2 신청취지 및 사실관계

□ 신청취지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통한 결제 시 결제 증빙의 상세화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증빙 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결제 증빙과 관련한 상세화 규정 신설을 제안함.

□ 사실관계

현재 인천 남구청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 내역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건 별로 구비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사용내역(메뉴 등)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음.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5조 [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 (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3 조사결과

□ 결 론 (기각)

- 현재 인천 남구청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규정임.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현행 규정도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규정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정하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건의하여야 할 것임.

4 도로개설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의 사후 구제책 요청

1 민원 요지

주관 옴부즈만	남구청의 도로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김 태 응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요청함

2 조사내용

□ 신청취지

신청인의 쟁점부동산은 2005년 인근도로의 개설 공사로 쟁점부동산과 도로의 지면 고도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통행의 불편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야기되었으므로 구제방안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청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의 입장

가. 해당 도로개설 사업은 2006년 5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보상대상이 아니었으며 보상대상자에 합의된 보상은 2005년에 완료되어 추가보상은 고려할 수 없음.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입은 해당지역에 대한 사업없이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통보.

□ 사실관계

가. 쟁점 부동산의 인근 도로 (독정리로 00번길)개설사업은 2005년부터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였고 2006년 5월 도로가 개설되었음.

나. 도로 개설 당시 보상대상자가 아니었던 신청인의 부모님은 도로 개설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인의 부친은 사망한 상태로 현재 청구인의 모친이 치매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

라. 건설과에서는 해당 사업(도로개설)이 경료된지 10년이 넘는 현재 시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

3 판단 및 결론

□ 판 단

가. 우리 나라 헌법 23조에서는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있음.

나. 당해 사안을 살펴 보건대 먼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보상이 우리 헌법23조에서 인정하는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다. 둘째 손실 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사업이 10년 전에 경료된 점을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라.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여겨지므로 신청인에게 소송절차로 나아가게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결 론 (의견표명)

신청인의 신청 취지와 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살펴건대, 위 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주장은 일견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법적절차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의견으로 표명함

4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옴부즈만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소송절차를 안내하였고 민원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임

5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취득세 부과에 타당성 검토

1 민원 요지

주관 옴부즈만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던 물권을 대상으로 한
김태웅	취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함.

2 조사내용

□ 신청취지

건축물의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의 취득세가 건축물의 실질 취득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특정사유로 인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신청인에게 과세되었으므로 이는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과세 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10 여년 전 발생한 취득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 당시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간주하여 내린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 사실관계

가. 분쟁 대상 건축물은 2010년 4월 22일 대위등기를 원인으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보존이 이루어짐 (소유자 : ○○종합건설)

- 지방세법 상 건축물 원시취득의 취득세 성립시기인 사용승인일 전의 등록이므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단, 대위 등기가 이루어졌다함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종합건설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음.

나. 2010년 5월 18일 건축법 시행규칙 11조에 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건축주)와 관련한 승인필증을 교부 받음.

- ○○종합건설로부터 미수금이 있었던 청구인은 ○○종합건설 측에 해당 미수금의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전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종합건설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건축주)의 제안을 받아 구청에 승인신청을 받아들임.

다. 2010년 9월 30일 남구청 건축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되어 사용승인일 시점의 건축관계자(건축주)인 신청인 한○○에게 취득세를 부과함.

- 건축물 대장 상의 소유권보존에서 신청인 한○○ 으로의 변동원인은 소유자 등록을 원인으로 등재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 표기되지 않았음

라. 2010년 10월 27일 신청인 한○○에서 ○○종합건설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건축물 대장 상 소유자가 변경됨.

-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종합건설로 등기가 표시됨.

□ 조사경위

가. 2017. 2. 22. 옴부즈만 면담 예약

나. 2017. 3. 8 최초 청구인 면담을 통해 민원접수

다. 2017. 3. 8. 남구청 세무과 및 인천시청 체납담당과 통화 후 사실관계 파악

- 해당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기산일 확인으로 해당체납과 관련한 결손처분 불가통보

라. 2017. 3. 15. 남구청 세무과에 사실관계 통보 및 검토 요청

- 해당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인과 소멸시효의 불성립 재확인 및 지방세 기본법상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마. 2017. 3. 22. 인천남구청 세무과 담당자와 면담

- 과세관청의 과세 근거 청취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해당 납세의무의 귀속과 관련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

3 조사결과

□ 판단

가. 10년 전 발생한 취득세의 실질 귀속과 관련하여 이를 현재 시점에서 실질 귀속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서류 상 (건축물 대장)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다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과세대상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신청인이 아닌 제 3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용되어야 할 것임.

다. 따라서 당해 처분의 취소를 위해서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권귀속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결 론 (의견표명)

소송절차를 통해 소유권의 실질귀속 문제를 확정된 후 행정청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절차로 나아가야한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의견을 표명함

4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소송 진행중임.

6 정신병원 개원반대 진정민원

1 민원 요지

주관 옴부즈만	경원대로 000 △△아파트 단지 인근에 정신병원이 개원하는데 대하여 인근주
강 원 구	민 1,492명이 개원을 반대하며 집단 진정민원 제기

2 조사내용

□ 신청 취지

개원예정인 정신병원 주소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이며 근처에 학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이 개원될 경우 자녀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되므로 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

□ 피신청인의 주장

병원 개원에 대한 허가 처분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36조의 시설기준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 허가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로서 임의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음.

□ 사실관계

가. 2017년 7월 25일 신청인 박00은 구민감사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고게시판에 구 ○○요양원의 자리에 정신병원을 재 오픈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장하면서 현장 확인을 요청함. 또한 입주예정인 병원장과 근처 주민대표들과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함.

나. 2017년 8월 10일 감사실은 민원을 접수한 후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로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답변을 첨부함.

- 답변내용-현재 해당 소재지 의료기관 허가신청 사항이 없으며, 향후 해당 소재지에 의료기관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의료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음.

- 다. 2017년 8월 11일 민원인 박00은 구민감사 옴부즈만 고충민원신고계시판에 당시 리모델링 중인 구 ○○요양원의 병실마다 설치된 창살이 혐오스럽다며 선팅을 통하여 쇠창살이 안 보이게 중재를 요청하였고 옴부즈만실은 민원을 접수한 후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로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현지조사를 통해 답변함
- 답변내용-해당 소재지 동 건물에 창살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필름 시공을 확인하였으며, 개원예정자에게 민원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현장 사진을 첨부함.
- 라. 2017년 9월 4일 00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
- 마. 2017년 9월 8일 민원인 박00은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00병원 개원반대 진정서]를 제출함.
- 바. 2017년 9월 15일 인천남구보건소는 00병원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함
- 사. 2017년 9월 15일 배세식 구의원, 00병원 개원반대 추진위원장 박00 외 주민대표 6인, 김인수 남구보건소장 외 직원3인, 강원구 구민감사 옴부즈만이 참석하여 민원인 면담 실시함.

<면담 내용>

- 배세식 구의원 및 주민대표 입장 : 격리병실운영, 주차, 소방, 전기, 안전, 자동차 진출입, 옥상개방 등 주민 불편을 이유로 허가유보 요구
 - 남구보건소 입장 : 원병원의 설립허가 요건에 문제가 없는 관계로 허가유보는 불가하다는 입장
 - 옴부즈만이 현장에서 피력한 입장 :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이해하나, 정신질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이 아니라 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는 곳이니 정신질환자에 의한 위험은 병원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바, 오히려 병원과 주민 간에 소통을 통하여 좀 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
- 아. 2017년 9월 18일 민원인 박00은 구민감사 옴부즈만 고충민원신고계시판에 00병원 옥상의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묻고, 병원 주차장 입출 시 인도를 통과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문의함.

3 조사결과

□ 판 단

가. 본 사안의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및 법령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 정신병원을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시켜 당해 병원개설에 대해 불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주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에 정신병은 포함되지 않음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당해 병원의 개설에 대한 허가처분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36조의 시설기준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 허가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로서 임의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상의 별표3에 정한 시설기준과 별표4에 정한 시설규격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상의 별표3과 별표4의 기준을 준수 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 할 수 없었음.
- 소방시설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도 인천남부 소방서를 통해 적합 판정결과를 통보 받았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남부경찰서에 의료기관개설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결과 범죄경력 없음을 확인받았음.
- 이상으로 의료기관개설에 따른 법정 자격요건과 시설요건을 검토한 결과 미비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사항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 처분은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음을 확인하였음.

나. 민원인들의 생활근거지 인접지역에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정신병원이 개설되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진정내용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이것이 기속적 행정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법적 거부처분의 정당화 사유로 작용할 수는 없음.

다. 그러나 격리병실의 쇠창살이나 병원옥상의 환자들 모습은 주민들의 일상에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병원의 주차와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있음.

라. 따라서 병원의 외관에 대한 차단 시설을 보완하고 주차시설 및 차량 진출입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후속민원의 발생을 억제토록 해야 할 것이며 환자관리에 대한 보건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결 론 (의견표명)

남구청의 정신병원 개원허가처분은 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병원개원으로 야기될 후속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견으로 표명함.

4 해당부서 조치결과(수용)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추후 후속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수행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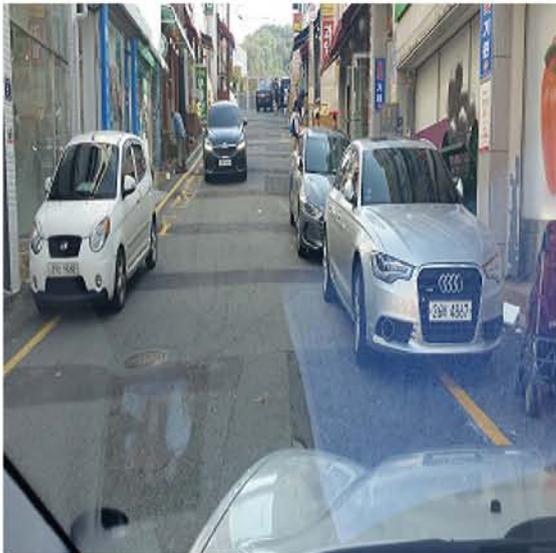
※ 현장사진



정신병원 외관(야간)



정신병원 외관(주간)



병원주변 교통혼잡



병원입구 교통혼잡

7 지적재조사사업(주안5구역)조정금 관련 민원

1 민원 요지

주관 옴부즈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납부 조정금 산정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불합리
김 태 응	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산정하여줄 것을 요구

2 조사내용

주안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나 신청인들로부터 조정금(납부)이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조정금 납부 금액을 하향해 줄 것과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과정 중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원상태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함.

□ 피신청인의 주장

2013년 4월 주안 5지구 실시계획 이후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고시, 경계결정 등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진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 등은 준수하였고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과정도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불합리 하지 않으므로 큰 폭으로 감액할 수 있거나 사업의 취소 사유는 존재 하지 않음.

□ 사실관계

가.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주안동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추진목적 : 집단적 경계 오류로 인한 지적 불부합지 해소
- 시행기간 : 2013년 4월 ~ 2013년 12월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660-1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91필지, 52,224m²
- 착수요건 :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각각 2/3이상의 동의
- 대상지구 위치도



나. 대상지구 불부합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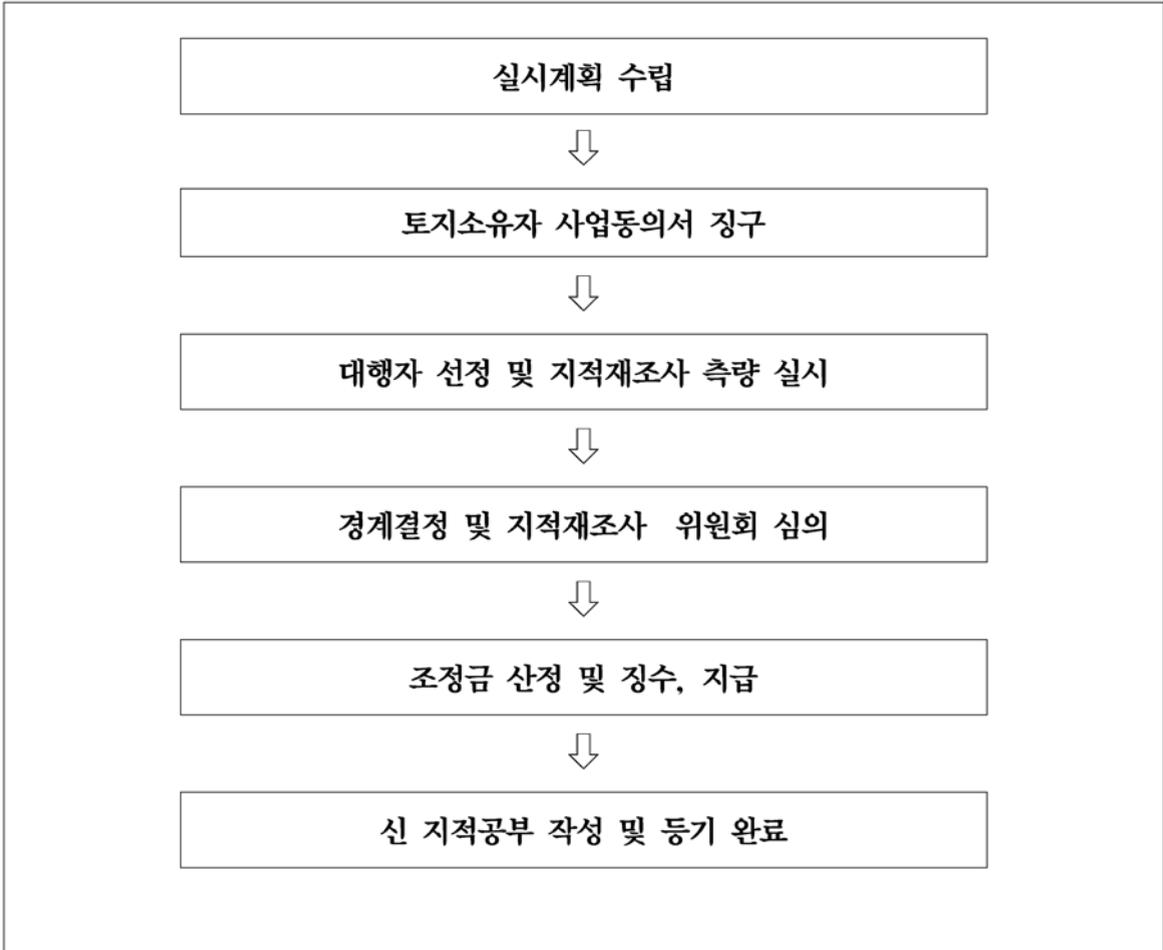
(1) 대상지구 불부합 발생 배경

- 수봉산 정상을 기점으로 법정동의 경계(송의동, 용현동, 도화동, 주안동)를 정하고 각각 종이 지적도면을 기준으로 측량 실시
- 산의 경사 부분은 평지 부분에 비하여 측량 정밀도가 부정확

(2) 우리 구 지적불부합지 현황

- 19개지구/3,086필지/442천m²/필지대비 약 5%에 해당

다. 사업진행과정



3 조사결과

□ 판 단

가. 사업진행관련

- 2013년 4월 주안 5지구 실시계획 이후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고시, 경계결정 등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진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 등은 준수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조정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구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함.

나. 조정금 산정에 관한 절차적 하자

-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정에 있어서 2016년 7월 15일 서면결의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는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으며 이후 동년 9월 26일 지적 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7년 8월 24일 2차 감정평가금액이 산출되어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
- 하지만, [인천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결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적 재조사 위원회 개최를 통한 결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면 결의에 따른 조정금 산정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자칫 해당 서면 결의는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위원회의 서면결의에 관련한 정당성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결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보기에선 무리가 있어 보여 회의(화상회의 포함) 개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면 조정금 산정에 관한 서면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서면결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며 회의(화상회의 포함) 개최 예외사유를 경미한 사유 등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다. 조정금 납부 금액과 지급금액의 불균형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예측 미비

- 해당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남구청이 지급하여야 할 조정금은 대략 3.2억이며 수령하여야 할 조정금은 13억원에 해당하여 조정금 관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조율 할 수 있는 홍보나 안내 수단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라. 관련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 하였을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 30조에 따른 시, 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인천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결 론 (시정권고)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구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 구민에 대한 서류상 동의 징구 외에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 발생할지 모를 민원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나. 조정금 산정에 있어 타 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면결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향후 2차 조정금 산정에 있어 실제 회의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후속절차로 나아가기를 권고함.

4 해당부서 조치결과(수용)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추후 조정금 2차 산정에 있어 서면결의를 지양하고 실제 회의로 나아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와 홍보등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함.

8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요구

1 민원 요지

주관 옴부즈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게 지연됨을 지적하며 조속한 처분을 요구
강 원 구	

2 조사내용

□ 신청 취지

용현동 소재 미준공 무허가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지연되는 것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편향된 민원처리일 뿐 아니라 지방세수입 탈루에 조력하는 것이므로 처분대상자에게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게 함.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의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함.

□ 피신청인의 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분쟁이 있어 판결을 통해 소유자가 확정 시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연기하고 있음

□ 사실관계

- 분쟁의 대상이 된 건물은 30 여 년 동안 미준공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는 건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 사이에 소유권확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임.
- 신청인은 현 등기명의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련 부서에서는 소유권이 확정된 후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여 법률관계의 일률적 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함

3 조사결과

□ 판 단

신청인의 신청 취지와 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살펴 본 결과,

가. 신청인은 미준공 무허가 건물의 장기간 방치되어 위법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행정당국의 편의를 위해 그 처분이 지연된다면 위법상태 유지에 협조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는 취지이고 남구청의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를 통해 확정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판결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복잡해질 수 있는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한다는 면에서 순연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나.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 판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 소유권 분쟁중인 등기명의인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

다. 따라서 소유권 분쟁 확정 전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그 부과를 지연하는 것은 차후 법률관계의 일률적 해결이라는 편의성을 위해 위법상태를 지속시키는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로 귀결 될 수 있으므로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결 론 (시정권고)

지연하고 있던 현등기명의인을 대상으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즉시 시행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를 권고함.

4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여 민원 종결함.

9 용현동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관련 민원

1 민원 요지

주관 옴부즈만	30 여 년 동안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요구
김 태 응	

2 조사내용

□ 신청 취지

남구 용현동234번지는 구유지로서 30 여 년 동안 민원인들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천광역시 「국·공유 재산 세입분야 컨설팅 감사」 결과 지적되어 5년 간의 변상금이 소급 부과되었고 이에 대해 민원인들이 부과철회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함.

□ 신청인의 주요 주장내용

- 가. 점유자의 점유에 악의가 없었으며 소유권자인 인천 남구청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
나. 해당 도로의 목적부합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남구청에 책임 전가
다. 1978년 구획정리 후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 지도, 안내, 표시 및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라. 해당 도로의 미개설로 오히려 주변 주민들은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
마. 도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오히려 해당 주민들에게 재산 상 피해를 끼쳤음.
바. 현실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사. 변상금 부과 집행은 부당하며 변상금 부과를 철회 할 것을 요구
아. 해당 토지를 점유자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 것을 요구

□ 피신청인 주장

- 가. 컨설팅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으며 변상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나. 해당 지역은 용현 1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가능함.
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에 의하여 3년 12회 이내의 분납이 가능하도록 안내.

□ 사실관계

가. 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34번지
- 소유자 : 인천광역시 남구
- 면 적 : 564㎡
- 기 타 : 1978. 07. 01 구획정리로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미개설, 미사용.
- 현장 위치도



• 현장사진



나. 변상금 부과경위

인천광역시 [국공유재산 세입분야 컨설팅 감사] 결과에 의거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점용료 36백만원에 미 부과함으로써 재정확충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지적함.

다. 감사이후 추진 상황

- 인천시 컨설팅 감사 : 2016.10.24. ~ 2017.04.30.
- 감사 결과 처분요구 : 2017.05.11.
- 현황 및 경계 측량 : 2017.08.14. (측량 결과 통보)
- 변상금 사전 통지 : 2017.08.28.
- 변상금 확정 부과 : 2017.10.10.

라. 측량결과 및 변상금 부과 현황(2012. 1. 1. ~ 2016. 12. 31.사용분)

구 분	도로 지번	점용 토지 지번	점용 면적(m ²)	변상금(원)	용 도
1.	용현동 234번 지	용현동 000-00	103.7	4,422,570	주 거
2.		용현동 000-00	120.6	5,143,320	
3.		용현동 000-00	109	4,648,610	
4.		용현동 000-00	95.5	4,072,870	
5.		용현동 000-00	65.5	2,793,400	

3 조사결과

□ 판 단

가. 변상금 산출 내역의 적정성 여부

-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부과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며,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2016.2월 193쪽)에 의하면 변상금 부과는 '부과 고지일'로부터 5년 간 소급하여 부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점유 토지와 관련하여 점유자에게 구청에서 변상금을 사전 통지한 2017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무단 사용기간 5년을 소급 적용하면 무단사용기간 기산일은 당초 2012.01.01. 에서 2012.08.28.일로 조정되며 2016.12.31.을 기준으로 기 부과된 변상금은 아래와 같이 변동됨.

구분	토지 지번	점용면적(m ²)	당초(조정 전)(원)	변경(조정 후)(원)	차액(원)
1	용현동 000-00	103.7	4,422,570	3,852,190	570,380
2	용현동 000-00	120.3	5,143,320	4,479,980	663,340
3	용현동 000-00	109	4,648,610	4,049,080	599,530
4	용현동 000-00	95.5	4,072,870	3,547,590	525,280
5	용현동 000-00	65.5	2,793,400	2,433,120	360,280
계			21,080,770	18,361,960	2,718,810

- 또한, 2017.01.01. ~ 2017.12.31. 까지의 변상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됨.

구분	도로 지번	점용 토지 지번	점용 면적(m ²)	변상금(원)	용도
1.	용현동 000번지	용현동 000-00	103.7	903,430	주거
2.		용현동 000-00	120.6	1,050,660	
3.		용현동 000-00	109	949,600	
4.		용현동 000-00	95.5	831,990	
5.		용현동 000-00	65.5	570,630	

- 이후 사용허가 신청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는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사용료는 변상금 (사용료의 120%)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2018.01.01. ~ 2018.12.31.간의 예상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 될 수 있음.

구분	도로 지번	점용 토지 지번	점용 면적(m ²)	사용료(원)	용도
1.	용현동 000번지	용현동 000-00	103.7	752,860	주거
2.		용현동 000-00	120.6	875,550	
3.		용현동 000-00	109	791,340	
4.		용현동 000-00	95.5	693,330	
5.		용현동 000-00	65.5	475,530	

나. 해당 토지 매입 관련 사항

- 해당 도로는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로 2009. 12. 14. 자로 정비구역지정 및 2006.09.27. 자로 추진위 승인된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3항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현 시점에서 매각, 매입이 불가능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의 ‘정비구역안의 국유, 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와
- 동법 제5항의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해당 도로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담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다. 변상금 분할 납부 관련

- 향후 민원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과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이므로 일시납이 불가능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할 것임.

□ 결 론 (시정권고)

-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원의 발생원인인 변상금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분을 취소 할 수는 없음.
- 나.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2016.2월 193쪽)에 따라 처분에 의한 변상금 부과기간의 기산점을 2012.01.01.에서 2012.8.28.로 변경하여 당초의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처분 수용의 폭을 넓혀 추가적인 민원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것임.

- 다. 또한 향후 사용허가를 받은 후 납부할 사용료가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될 변상금 보다 낮은 금액임을 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합법적인 점유사용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점유지가 현시점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나 동법 동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는 수의 계약 등으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경 안내 하여야 할 것임.
- 마. 민원인에게 부과된 5년 간의 소급변상금이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상회하는 상황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임.
- 바. 마지막으로 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자면 변상금 부과 원인이 된 민원인들의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타인지배를 배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악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구청의 관리 감독책임이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향후 무단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해당부서 조치 결과(수용)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변상금 소급부과의 기산점을 당초 2012. 1. 1.에서 2012. 10. 11.로 변경하여 감액 부과처분함.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 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66조(국유, 공유 재산의 처분 등) ①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국유지·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 용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0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1 민원 요지

주관 옴부즈만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신청인이
손 보 경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취소를 요구

2 조사내용

□ 신청 취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정식절차에 의해 장애인주차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2년 3월경 분실로 인해 분실 신고를 한뒤 재발급 받지 않았음. 2017년 분실되었던 주차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차량에 비치하고 다니다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중에 제3자가 이를 사진촬영 신고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나 사전통지 공시 송달 및 2차 공시 송달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이의를 신청함.

□ 사실관계

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은 2017. 8. 9. 00:30:10 경 신청인이 인천시 서구 연희동 799-14. 청라센트럴프라자 지하 주차장 내에서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00조 0000/ 스포티지/ 신청인 소유차량)를 부당사용하였다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3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90조 3항을 적용하여 처분대상자인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1차 사전통지 및 2차 과태료처분 통지함.

나. 개폐문부재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공고(제목: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를 1차 2017. 10. 20.자 남구청공고 제2017-1439호 및 2차 2017. 11. 22.자 남구청공고 제2017-1582호로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다. 이에 처분 당사자인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시설 팀의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

□ 신청인 주요주장내용

가. 사전통지 공시송달(남구청 공고 제2017-1439)의 절차위반

- 과태료 처분통지와 관련하여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은 남구청 공고 제 2017-1439호 공시송달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상에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을 방문하여 위반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한다는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구두진술 및 서면으로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른 처분과태료금액 표시를 공고문에 안내
-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전통지 공고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는 안내 등

의견제출 및 감경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중대한 고지의무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에서 위반하여 신청인이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원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주장.

나. 2차 공시송달 (남구청 공고 제2017-1582호)의 절차 위반

- 2017. 11. 22.자 남구청 공고 제2017-1582호 공시송달공고문에

- 1차 공시송달과 같은 제목의 공고명칭과 같은 내용의 문구만 있고, 2차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인지 아니면 의견 제출기간 경과로 인한 감경 없는 과태료처분통지 공시송달인지 구분이 없으며
- 과태료처분금액이 1차 공시송달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권리구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권리구제 수단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한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

- 만일 2차 공시송달공고문이 기간 경과로 과태료 감경 없이 처분 통지한 것이라면 공시송달 유의사항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기초적인 고지의무의 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사실을 간과한 절차위반임을 주장

다. 사전통지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과 후속처분 통지기간 간의 불부합

- 2017. 10. 20.자 남구청 공고 제2017-1439호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 중 의견 제출 기한을 2017. 11. 4.자로 공고하고,
- 2017. 11. 22.자 남구청 공고 제2017-1582호에서 행정처분통지서 발송일(2017. 10. 24.)과 반송일(2017. 11. 2.)을 1차 공시송달의 사전통지 효력이 발생되기 전으로 기재하여 기간 상의 불부합을 초래함.

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범위와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 신청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2년 3월경 분실하여 승의2동사무소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분실된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를 습득하여 소지, 사용함.
-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당시 신청인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목발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 상태로, 차량(25조 1113)과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25조 1113)는 신청인 본인 명의였고 차량과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의 번호가 일치하였기에 분실한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함.
-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부당사용의 범위는 『주차표지를 불법 대여·양도하거나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로 분실신고 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본인 명의의 차량에 주차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담당자의 자의적 법리해석 문제로 봄.
- 신청인은 분실신고 후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습득하면 반납해야 하는지 또 분실신고 후 재사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는지 등의 구두설명이나 서면고지를 통보 받은 바 없으므로 현행법상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을 주장.

마. 처분 및 단속과정의 부당성 검토

- 민원인이 제출한 증빙자료(현장사진)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법리해석에 의한 처분에 목적을 두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과태료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이의 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취소 조치해 줄 것을 요청.

3 조사결과

□ 판단

가. 사전통지 공시송달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과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전통지와 관련된 1차 공시송달공고에 해당 내용이 부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2차 공시송달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2차 공시송달공고에도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2항 과태료의 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기간의 불부합 여부에 대한 판단

- 사전통지와 관련한 공시송달 종료일은 2017. 11. 04.로 이후 사전통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여 10일 간 의견 제출이 가능한바 의견 제출기간 이전인 2017.10.24.에 행정처분통지서 발송을 한 것은 요일 산정기준에 대한 불부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과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 분실 신고된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의 사용은 단순오인으로 인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 분실 신고된 주차표지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용의 범위 중 ‘유효기간 만료 후 부당사용’에 해당하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 8월까지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명칭 및 모양이 변경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였고, 2017년 9월부터 미교체 차량 단속이 시작되었기에 단순 오인이란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 처분 및 단속과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 일반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한 과태료 처분은 원인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 현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민원신고가 가능하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됨.

□ 결 론(시정권고)

가. 과태료 부과처분은 시혜적 또는 이익적 처분과는 달리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이니만큼 처분을 행함에 있어 담당자는 업무상 수반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

나. 당해 사안에 대해 민원인의 주장을 사항 별로 검토한 결과 위의 판단근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민원인의 불복을 위해 고지되어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간의 불부합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불복의 기회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이 분명해 보임.

다. 이는 업무담당자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결여되어 초래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업무담당자는 향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함.

라. 아울러 위 절차상 하지는 민원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야 할 것임.

마. 다만 당해 사안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처분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 절차로 나아갈 것을 권고함.

4 해당부서 조치결과(수용)

옴부즈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 절차로 나아감.

※ 참 고

(1)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남구청 공고 제2017 - 1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04(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남구청 사회복지과(☎032-880-7330)

2017. 10. 20.

남 구 청 장

(2) 2차 공시송달 공고

남구청 공고 제2017 - 15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07(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남구청 사회복지과(☎032-880-7330)

2017. 11. 22.

남 구 청 장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과태료)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부

부 록

1. 언론보도 등 홍보사항 95
2.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3

제6부 부록

1 언론보도 등 홍보사항

1 현대일보 (2016. 08.02)

현대일보

2016년 08월 02일 화요일 010면 인천



고충민원 공평·민주적 '해결'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현판식 갖고 활동 개시

구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민감사 옴부즈만이 활동을 개시했다.

인천시 남구는 1일 구청 본관 5층 구민감사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은 박우섭 남구청장을 비롯해 이봉락 남구의회 의장, 구의원, 옴부즈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초대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최낙정씨와 이코노미 21 국정거버넌스 포럼 대표 김용석씨, 중앙세무법인 세무사 김태웅씨 등 행정·노동·회계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고충민원 상담을 비롯한 구민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박구청장은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직무의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민감사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와 관련한 구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인 옴부즈만이 직접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련 부서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민원 조정 권고, 의견 표명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옴부즈만은 현대 행정의 다양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구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해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구민감사 옴부즈만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남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9월 30일자로 공포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5일 제21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희동 기자 jhd@hyundaiilbo.com

2 인천일보 (2016.05.18)

인천일보

2017년 05월 18일 목요일
013면 사람들



남구민 권익보호 옴부즈만에 손보경

인천 남구는 15일 결원된 구민감사 옴부즈만 1명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손보경 옴부즈만은 인천여성회 소속으로 시민단체에서 여성 권익증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현재는 작은골목도서관장직을 맡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한 각 분야 전문가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구민들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

구는 지난해 8월 옴부즈만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인천일보

2017년 9월 5일 화요일 013면 사람들



손보경 남구 옴부즈만 위원

“주민도 몰랐던 권리 제가 찾아 드릴게요”

“남구 옴부즈만으로서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여성회에서 8년여간 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손보경씨가 올 3월 남구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됐다.

남구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옴부즈만 제도는 구청장이 임명한 각 분야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행정의 감시기능을 수행,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손위원은 여성회가 운영하는 동구 작은골목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으며 오랜 시간 학익동에 거주한 남구 주민이기도 하다.

남구 주민을 대표해 민원과 갈등 해결에 힘쓰고 싶다는 손 위원은 옴부즈만 제도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구청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 옴부즈만이 주민을 대변해

8년여동안 여성 권익 증진 활동 민원 전달·구청 입장 설명 역할

민원을 전달하고 구청의 입장을 설명하는 제3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손 위원은 최근 민원을 두고 구청 내 부서에서 업무 책임을 고민하자 혼란을 느낀 주민을 도왔다.

해당 주민은 본인의 집 근처 삼거리에 불법 주차가 급증해 불법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화분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차 문제라 교통정책과에 민원을 넣었으나 화분 설치는 공원녹지과 업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공원녹지과 또한 민원을 어디서 맡아야 할지 애매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분은 화분을 설치해주면 관리를 맡

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화분 설치는 못했어요. 구에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간에서 부서와 소통하면서 주민분께 민원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드렸어요.”

손 위원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당시 옴부즈만 제도의 조례가 개정됐다. 그동안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하려면 ‘30인 이상의 연서’라는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생긴 지난해 8월~12월 접수된 민원은 10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조건이 사라지면서 5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일상 속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또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사진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4 인천일보 (2017.12.08)

인천일보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018면 사회

구민 억울함 달래는 '옴부즈만'

남구, 시행 1년간 민원 20여건 해결

인천 남구의 '구민감사 옴부즈만'이 시행 1년 만에 20여건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30인 이상의 연서 제출이라는 조건을 폐지 하면서 옴부즈만을 찾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옴부즈만 제도 시행 후 처리한 고충민원은 20여건이다. 부서로 이첩한 단순민원은 68건이다. 민원은 건축과 부동산,

세무 관련 등이 대부분이다. 남구는 원도심이라는 지역 특성 상 행정구역이 정리돼 있지 않아 민원인도 모르게 도로를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 옹현동의 한 주택가에 있는 4개 구는 인천시 컨설팅 감사를 통해 도로 무단 점유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5년 치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도로로 무단 점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냈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은 옴부즈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구민감사관인 위원들이 조사에 나섰다. 협의 끝에 변상금을 300만원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

당시 민원 조사를 맡은 김태웅 위원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해하셨다"며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담당부서에 한 번 더 민원 검토를 요구하는 등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도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구 담당부서에서 먼저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민원의 해결점을 찾지 못해 제3자의 의견이

필요할 때다. 박우섭 구청장은 구가 진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남구를 포함한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감사관이 민원을 살피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같다.

구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의 권리를 찾고 감사관들의 역할을 넓히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은 적극적으로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happy11@incheonilbo.com

5 홍보 리플렛 배포 (2017.07.21)

전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일이 있으신가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억울한 일을 겪으셨나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인천광역시 남구 읍무즈만과 상담하세요,
남구 읍무즈만은
구민의 고충을 함께 하겠습니다.



읍무즈만(Embuzzerman)
스페인어로 남의 말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Sagein)이라는
의미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 버스 : 4, 23, 28-1, 33, 72
☎ 전철 : 1호선 지동로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로로 10분
또는 마을버스 512번 이용 정류장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우22169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리로 95
남구청 감사실(인권조사팀)
TEL.032)680-4585 FAX.032)680-4807

인민광역시 남구
읍무즈만

**‘시민의 마음’과
‘전문가의 시각’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고충,
남구 구민감사 읍무즈만이 따뜻하고 나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후면

인천광역시 남구 읍무즈만은?

사회가 분야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지휘이
읍무즈만은 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시장권고요청 공공
감사이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정·중재하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로 공평하고
투명한 구충민원회거부
구입이 신뢰보육이
향상된 상황을 목적으로
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나요?

- ▶ 구성
 - 제부처, 시민보육과, 권익전문가
- ▶ 임기·신분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비상근 명예직
- ▶ 운영규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남구 읍무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이용처(외부연)의 조인
 -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평을 겪는 경우 누구나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어떤 일을 하나요?

- ▶ 다수인 민원이나 공공감사와 같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장권고, 의견표명
- ▶ 업무범위 제외대상
 - 행정청인, 행정소청이나 감사청의 심사청구 등이
인행 중인 사항
 - 감사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관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고충민원인 내용이 거짓이거나 잘못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하나요?

- ☎ **전화**
032)680-4585(감사실 인권조사팀)
- ☎ **팩스**
032)680-4807
- ✉ **우편·방문**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리로 95(송의동)
- 🌐 **남구청 홈페이지**
(www.namgu.incheon.kr)
주인창에 > 구민감사 읍무즈만 >
고충민원신고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 01- **고충민원신청**
인태로,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 02- **민원분류**
파급·개선효과 및 경·중을 감안하여
장래의 민원으로 부의
(단순민원은 관계부처로 이첩)
- 03- **조사여부결정**
필요한 경우,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읍무즈만 지정
- 04- **조사실시**
처리기간은 60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이 범위에서 연장가능
- 05- **조사결과확인**
필요한 경우, 의견을 거쳐 읍무즈만
한정하여에도 조사결과 확정
- 06- **조사결과통지**
민원하신 및 권익전문가 정보
(시장권고, 제보개선, 의견표명, 민사처분)

6 실내 · 외 배너 설치



본관 1청사 입구



종합민원청사 입구



본관 2청사 입구

7 구 홈페이지 홍보배너



8 각 동 현수막 및 미니배너 설치



주민센터 미니배너



주민센터 현수막

9 남구 소식지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홍보

구민을 위해 생각하고 움직인다

‘구민감사 옴부즈만 신청 쉬워져



이용 방법

별 문 인천 남구 죽동리로55 남구청 감사실
 전화 감사실 인천시콜센터 880-4385
 인터넷 남구옴부즈만 접속 - '주민참여'
 메뉴선택 - '구민감사옴부즈만' 클릭
 전직무원 rrgan1@korea.kr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대에 의해 민원 신청을 받은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행정이 다양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구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고충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이런 민원을 구민 관에서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행정과 구민 사이의 소통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옥대, 철도공사 등 관직에 몸담았던 경음식 옴부즈만 대표의 설명이다.

옴부즈만에 신청할 수 있는 현원은 고충민원,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처분했거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민원, 사무의 처리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공무원이 늦게 대처해 불편을 겪는 민원, 기타 행정 처리로 권리 침해당한 민원 등을 고충민원이라고 한다.
 접수된 민원이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하기로 결정되면 옴부즈만 담당 직원의 의견을 먼저 서후를 검토하고 때로는 현장 방문조사를 벌인다.

“행정 직원이 별 의용을 하면서 농민 부분은 없는지, 부서 사이의 사안이 달라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결과가 나오면 옴부즈만은 이를 토대로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사 요청, 권고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3월 구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취지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접수 민원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 대표는 본인 휴대전화번호 공개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만 아나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자구, 구민 복지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옴부즈만을 찾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방문, 전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신건호 민원지원

구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민감사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는 남구가 민원 민의에 한발 더 다가섰다.
 지난해 ‘구민감사 옴부즈만’을 시작한 남구는 지난 3월 민원 신청요건을 대폭



TIP

옴부즈만이란
 다수인 정부의 민원 전문가가 행정과 구민의 중간에서 고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불합리나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민원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옴부즈만에게 다시 요청해 보다 정밀한 조사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구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09. 30 조례 제1269호
 전부개정 2017. 03. 06 조례 제14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구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보호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ombudsman”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6.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ombudsman의 구성·직무 등

제3조(구성) ① ombudsman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대표 옴부즈만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mbudsman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ombudsman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제9조(직무관할) ombudsman이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ombudsman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ombudsman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ombudsman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ombudsman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ombudsman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구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표 ombudsman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호간의 관계) ombudsman은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가 자문)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 및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처리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옴부즈만의 운영지원 등

제2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9.30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6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